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 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41017	가맹본부홈페이지	www.satinhair.co.kr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14.10.23.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5.06.10.	가맹본부대표메일	uno1432@naver.com

[사틴헤어] 정 보 공 개 서

(주)사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
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
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
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
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
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
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5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0
1. [사틴헤어]를 시작한 날	
2. [사틴헤어] 연혁	
3. [사틴헤어] 업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사틴헤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바로 전 3년간 [사틴헤어] 가맹점 수	
6. [사틴헤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5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6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4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8. 광고 및 판촉 활동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40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1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VIII.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3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45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 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 표지	주 소			
	사틴헤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지하쇼핑몰 디001호(구의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10.25.	2011.10.25.	이해분	02-421-9800	02-417-4700
(주) 사틴	법인등록번호	110111-4714998	사업자등록번호		215-87-60222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 /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이해분 (주)사틴	사틴헤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지하쇼핑몰 디001호(구의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해분	02-421-9800	02-417-4700
이사	유새들 (주)사틴	사틴헤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지하쇼핑몰 디001호(구의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해분	02-421-9800	02-417-470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 (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사틴헤어』	‘사틴’은 ‘광택이 곱고 부드러움’을 뜻하며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추구하여 사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디자인으로 고객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자 헤어스타일과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미용헤어 전문브랜드입니다.
상 호	사틴헤어 ○○○ 점	
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 4101519490000 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현재 사용중인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미포함)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4년	465,138	27,748	437,390	90,420	-12,657	-12,278
2023년	468,716	19,047	449,668	97,328	9,942	9,860
2022년	443,235	3,426	439,808	153,515	-5,287	-60,124

그 근거자료는 [별첨-02]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본 가맹사업이외에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이 동일 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 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 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해분	원장	2011.10.25. ~ 현재	(주)사틴 대표	업무 총괄
			2000.03.30. ~ 현재	우노(UNO)미용실 대표	업무 총괄
			1999.05.25. ~ 현재	사틴헤어 코엑스몰점 대표	업무 총괄
	유새들	이사	2015.08.07. ~ 현재	(주)사틴 이사	회사 관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 해당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 (명)		직원 수 (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사틴	가맹사업 경영	2011.10.25. ~ 현재	『사틴헤어』라는 영업표지의 (등록번호:제 4101519490000)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출원일	출원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등록일	등록번호		
상표 	상표를 가맹점 운영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2006.09.26	제4120060024362호	(주)사틴	2027.07.25. (2027.07.25.)
		2007.07.25	제4101519490000호		
상표		2002.02.27.	제4120020004274호	유영 호	2023.07.25. (2023.07.25.)

SATIN	있는 권한	2003.07.25.	제4100887230000호		
-------	-------	-------------	-----------------	--	--

- 당사의 지식재산권 중 일부는 (주)사틴 이해분 대표이사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고, 당사는 소유자와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사틴헤어” 가맹사업현황

1. 「사틴헤어」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08년 04월 01일.

(직영점을 시작한날 : 1999년 05월 25일)

당사는 이해분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던 직영 및 가맹사업을 2011년 10월 25일 브랜드 및 가맹사업운영권을 인수하여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업종은 미용면허증 소유자만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주)사틴 법인으로 직영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분 대표이사 명의의 매장은 직영점 형태의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사틴헤어」 연 혁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틴헤어살롱	사틴헤어살롱	이해분	1999.05.25.~2011.10.2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코엑스몰 N20
(주)사틴	사틴헤어살롱	유강희	2011.10.25.~2012.06.10.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18-18
(주)사틴	사틴헤어	유강희	2012.06.11.~2013.10.16.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44(석촌 동,2층)
(주)사틴	사틴헤어	이해분	2013.10.17. ~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지하쇼핑몰 디001호(구의동)

3. 「사틴헤어」 업 종

영업표지	업 종	
사틴헤어	대분류	소분류 (주요상품)
	이미용	컷트, 드라이, 업스타일, 파마, 염색, 두피관리, 특수머리,메이크업, 샴푸등 (파마,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사틴헤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개)

연 도	2024.12.31			2023.12.31			2022.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	8	-	9	9	-	9	9	-
서울	8	8	-	9	9	-	9	9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사틴헤어」 가맹점 수

(단위:개)

연 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4년	9	-	1	-	-	8
2023년	9	-	-	-	-	9
2022년	10	-	1	-	-	9

□ [사틴헤어]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03]를 확인하십시오.

6. 「사틴헤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사틴헤어」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년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평균 매출액 (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사틴헤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추정 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 (상한)		연간평균매출액 (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8	511,377	3,779	1,167,768	7,372	85,311	698	산출: 5곳
서울	8	511,377	3,779	1,167,768	7,372	85,311	698	산출: 5곳
부산	-	해당없음	-	-	-	-	-	
대구	-	해당없음	-	-	-	-	-	
인천	-	해당없음	-	-	-	-	-	
광주	-	해당없음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경기	-	해당없음	-	-	-	-	-	
강원	-	해당없음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경북	-	해당없음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 산정 기준.

- ①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운영한 POS 현황]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②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까운 당사의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영업기간

당사의 직전연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영업기간
2024년	8개	4,073일(11년 2개월)

9. 가맹지역본부 (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 당사는 「사틴헤어」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및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9.광고 및 판촉활동]을 참조 하십시오.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금액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 계		※ 해당 없음	-	-	-	손익계산서 근거
광고비		※ 해당 없음	-	-	-	
판촉비		※ 해당 없음	-	-	-	

※ 해당 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 올림픽지점”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 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올림픽 지점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20 올림픽선수촌	02-431-852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사틴’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본사 02-431-8521으로 문의 바랍니다.
- “(주)사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신청서를 귀하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서식의 내용은 [별첨-04]을 확인하십시오.
-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 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Ⅲ**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사틴헤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귀하와 협의한 별도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대상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포함)

구 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 계	16,500				
가맹비	11,550	계약체결 동시에 예치	가맹점 개점 이전까지 계약해지	가맹점 모집 및 개점 소멸성 비용	귀책사유 없는 해지시 정산 후 반환
교육비	4,950	계약체결 동시에 예치	교육실시 이전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가맹비의 대가 내역은 1. 당사가 정하는 기준의 가맹점운영권 권리 부여 (20%), 2. 영업지역 부여 (10%), 3. 개점 시 가맹점 운영 및 영업 노하우 제공 (10%), 4. 개점 시 영업활동 지원 (10%), 5. 가맹점 운영을 위한 매뉴얼 등 각종 자료 제공 (20%) 6. 개점 전 교육 지원 (3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보증금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액 / 평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합 계	5,000			
계약이행보증금 (현금)	5,000	계약체결 동시에 예치	당사 제공물품 및 로얄티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 을 담보	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 부 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 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 산하여 잔액을 상환
※ 당사는 귀하가 개점 이후 당사 제공 물품 채무액 증가, 연체 빈도수 증가 등 귀하의 계약위반 정도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이행보증금 추가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고
합 계	21,500	
가맹비	11,550	
교육비	4,950	
계약이행보증금(현금)	5,000	부가세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물품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합 계		150,700 ~ 160,600	5,023 ~ 5,353			99㎡ (30 평)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	66,000 ~ 75,900	2,200 ~ 2,530	공사시작일	공 사 전 계약취소	협력사
간판 등	협력업체	7,700	—	공사시작일	공 사 전 계약취소	협력사

홀 집기	협력업체	22,000	—	물품수령일	상품 미 공급시	협력사
시술 집기	당사	33,000	—	물품수령일	상품 미 공급시	
초도 물품	당사	16,500	—	물품수령일	상품 미 공급시	
기타 소모품	당사	5,500	550	물품수령일	상품 미 공급시	

- ①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비용은 영업신고 및 교육, 사업자등록발급, 통신수단, VAN사, 홀집기와 시술집기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자체 시공할 수 있으나 당사의 관리 및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의 설계 및 감리의 대가로 총시공비의 1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홀의 집기, 시술 집기, 초도물품, 기타소모품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의 자체 구입시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⑤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당사가 점포개발을 대행하는 등 여타의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

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미성년자가 아닐 것 • 미용면허증을 소유할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미성년자가 아닐 것 • 미용사자격증을 소유할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사틴헤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의 내역중 별도시공 내역은 귀하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가 지정한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일시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9.광고 및 판촉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가맹본부	매월 매출액의 3.5%	익월 10일	반환 안됨	관리비로 비용소요	매출액 산정은 카드매출액 기준
리스료		해당 없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광고 총비용의 50% 중 귀하 부담분	명세서 수령 후 10일 이내	반환 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실제 소요되는 판촉비용 중 귀하 부담분	명세서 수령 후 10일 이내	반환 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1인당 월 11만원	명세서 수령 후 10일 이내	반환 안됨	교육비로 비용소요	월 1회 교육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가맹본부	실제소요되는 비용중 귀하 부담금	간판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증금		해당 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귀하의 귀책사유 발생 시 비용 산정	시공시작 전일까지	반환 안됨	교체·보수 비용소요	귀하의 귀책사유 외에는 교체보수를 요구하지 않음
점포환경개선비용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음
재고관리비용		해당 없음				
회계처리비용		해당 없음				
POS 사용료		해당 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약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반환 안됨	지연이자 비용정산	해당 지급 항목의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위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4년에 일부 가맹점에 공급하였으나 물품을 공급한 가맹점은 당사의 직영형태로 운영하는 곳이라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 관리	해당 없음		
회계 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현황 보고	월1회	익월 5일 보고
점포 관리	매장 환경에 대한 점검	수시	

- ☐ 가맹점의 청결, 위생, 회계 처리 등 점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정보시스템, 회계장부 등을 성실히 작성 유지해야 합니다.
- ☐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3. 계약 종료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부담

-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전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지난 가맹계약 동안 가맹점 운영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와 협의하여 교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수 없는 사유	비 고
총계	[]				
추가교육비	협 의 하 여 결정	교육시작 7일 이전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	교육개시 이후	추가교육필요시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사틴헤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사틴」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규정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및제한의 7.가맹점운영권의 양도]를 참조하십시오.

4)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

- ① 귀하는 본 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영업표지 등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철거 완료하여야 한다. 철거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 정보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환 또는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가 위 항의 1항 내지 2항의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영업표지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일십만원(₩100,000)〈부가세 없음〉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철거 완료 후 추가금을 현

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⑤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기존에 판매한 회원권에 대한 잔액을 계약 종료 전일까지 회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당사의 손해가 있는 경우 귀하는 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⑥ 귀하는 신속한 정산을 하기 위하여 당사의 계약종료정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 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사틴헤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가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내역은 [별첨-05:물품공급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귀하가 위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가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내역은 [별첨-05:물품공급목록]와 같이 이미용용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원·부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품목의 배열은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구매한 구매대금의 합이 높은 순서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당

사가 공급하는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연간 발생하는 공급횟수 또는 금액이 미미한 경우가 상당하므로 공급 단가를 별첨에 표기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사틴헤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 고
당사가 정하는 상품 및 가격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명 시정조치 3차 : 2차 서명 시정조치 4차 : 물품공금중단 5차 : 가맹계약해지	[별첨-06] 판매상품내역과 가격 참조

- 당사가 지정한 품목은 신상품개발 등으로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이거나 귀하와 가맹본부가 사전에 협의된 물품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 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컷트, 드라이, 업스타일, 파마, 염색, 두피관리, 특수머리,메이크업, 샴푸등 전반적인 이미용의 범위	가맹본부에서 정해주는 판매가격 권장	-월별 권장가격 서면에 의한 통보	[별첨-06] 판매상품내역과 가격 참조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첨-06]과 같습니다.

- 귀하가 위 표에 [별첨-06 참조] 기재되어 있는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매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 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비 고
	가맹본부	계열회사	
미용실, 네일샵	사틴헤어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비 고
행정구역당(읍/면/동 1개 가맹점)	가맹계약서 별첨-01에 영업지역을 표시	

- 당사는 행정구역 읍/면/동 1개의 가맹점을 설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세대수, 거주 인구수, 유동 인구수, 가맹점 간 거리, 지역 상권의 특성, 주요 근린시설,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영화관,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 및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 휴게소, 관광지 등 집합매장 내 가맹점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사틴헤어]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사틴헤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비고
온라인			해당 없음		
홈쇼핑			해당 없음		
전화권유판매			해당 없음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 판매등을 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종류와 가격 등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 ☐ 홈페이지의 주요 역할은 헤어 디자인의 종류, 가격, [사틴헤어]의 신상품정보, 이벤트, 오프라인 매장안내 (가맹점위치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7) 그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귀하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가맹점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귀하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귀하에게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귀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전연도 말 기준 [사틴헤어]영업표지로 국내에서 판매된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	—	—

비중이 기재된 채널은 국내 총 매출액에서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한 비중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온라인 전용상품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사틴헤어』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1]년입니다.

2)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계약조문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 9조 1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 9조 1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 9조 1
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 9조 1
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 9조 1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 9조 1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서 제24조(물품 공급의 중단) 각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설비 관리감독비 등 가맹본부와 약정한 각종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7.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

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이상의 유예 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1.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 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제28조 4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본부는 계약갱신시 가맹사업법 제12조4 및 시행령 제13조의 4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4항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협의하는 경우 본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상호 동의 없는 일방적인 수정 또는 변경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5조 3항
※ 계약의 수정사유에 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서에 정한바와 같이 기존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비 고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2-421-9800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

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 계약보다 적게 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가맹계약서 제 30조를 참조하십시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대리행사·위탁 등

-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 제 31조를 참조하십시오.
-

양도 가능 조건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비 고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가맹 계약서 제31조
대리행사	본부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대리 경영	가맹 계약서 제32조
업무위탁	불가능	※ 제3자의 위탁경영을 인정하지 않음.		가맹 계약서 제32조 2항

8. 경업금지 · 영업시간 제한 ·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_____지역내에서] 귀하가 [사틴헤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 허가 절차	비 고
미용실, 네일샵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여부 통지→완료	문의: 02-421-980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사틴헤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시간	영업 일수	비 고
10:00 ~ 22:00	연중 무휴 365일	문의: 02-421-9800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장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디자이너 5명, 스텝 5명	직접 근무	미용사자격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아닌 스텝	• 99㎡(30평)기준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 고
점포의 상태	매장 방문 → 관리항목의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S/V	
근무자 태도	매장 압행방문 → 관리항목의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S/V	
상품의 상태 및 진열	매장 방문 → 관리항목의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S/V	
창고 관리	매장 방문 → 관리항목의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S/V	

- 당사의 영업장 관리·감독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의 관리항목은 당사의 전략, 고객의 소리(VOC)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와 사전협의의 하게 됩니다.
- 가맹점 관리내역은 가맹점의 평가 및 (재)교육등에 기초적인 정보로 활용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사틴헤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광고실시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 절차 진행 → 광고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부담 광고비 확정	가맹점사업자간 균등부담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판촉물 제작	카다로그 등 판촉물 제작 총 비용	해당 없음	행사계획 공고 → 판촉행사 실시 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 실시 →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점사업자 선정 하여 최종 부담액 확정	가맹점사업자간 균등부담
	할인 행사	판촉기획에 소요되는	실제 판촉에 소요되는		

		총 비용	총 비용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 행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휴서비스 진행 안함

- 귀하는 당사가 진행하는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에 전국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이 시행여부 및 주요 내용에 찬성한 행사의 경우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다만,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판촉활동일정, 방법, 소요비용, 가맹본부의 지원요청 사항등이 포함된 “판촉활동계획”을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귀하 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 및 직원 등 피고용인에도 해당됨에 따라 이들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귀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관련계약조문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및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갑” 또는 “갑”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③ “을”은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갑”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계약서 제36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기한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일십만원 (₩100,000)〈부가세 없음〉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철거 완료 후 추가금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29조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 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99㎡(약30평) 기준 / 당사 시공시	약 [40]일 내외	[172,200 ~ 182,1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0(1일)	비용 없음
사업설명 및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39(1일)	비용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6~38(13일)	자체비용소요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제공	D-25(1일)	자체비용소요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4(1일)	비용 없음
가맹금예치	- “우리은행 올림픽지점” 가맹금 예치	D-24(1일)	예치가맹금 : 21,500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등 시공비용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2~23(2일)	비용 없음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기타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D-2~21(20일)	인테리어: 66,000 ~ 75,900 간판 등 : 7,700 홀 집기 : 22,000 시술집기: 33,000 기타 소모품: 5,500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D-1(1일)	초도물품 : 16,500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자체비용소요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점포 면적 및 위치, 해당 부동산의 현 상황, 공사기간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점포환경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 차: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가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

2. 판매촉진 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촉행사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은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02-421-9800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02-421-980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사틴헤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사틴헤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점 전 교육	1일차	회사 소개 및 회사 규정 안내	이론 및 실습교육	개점 전일	필수
	2일차	시술 매뉴얼 교육			
	3일차	매장 운영 교육			
개점 후 교육	헤어스타일리스트 양성 기술교육 사틴 인성 CS 서비스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	주 1회	필수
특별교육	신상품 출시, 매장 운영 부진, 기타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 당사의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

귀하가 [사틴헤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 별도)

구분	최소시간	비용	교육인원	비고
개점 전 교육	3일	가맹비 포함	가맹점사업자 1인	계약체결시 예치
개점 후 교육	주 1회 / 4시간	1인 월 11만원	가맹점 인턴직원 전원	-
특별 교육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실비 기준 산정

□ 당사의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이 연기되거나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관리자는 가맹본부의 노하우 전수, 시술 프로그램 및 가맹점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가 정한 개점 전 교육을 개점 3일 전까지 필히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이 연기되거나,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점포관리자의 범주는 점장에 한 한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필수로 진행하는 교육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필수 교육을 이수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정한 기간 내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 가정한 기준을 벗어나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교육 기간은 추가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 17조 참조)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VAT 미포함)	비고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2-421-98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02]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03]

가맹점사업자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앞 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05]

물품 공급 목록(원,부재료)

거래형태	강제	거래상대방	당 사	차액가맹금수취여 부	○
------	----	-------	-----	---------------	---

(단위: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품목은 당사의 경영방침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06]

판매상품내역 및 가격 (1)

(단위: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06]

판매상품내역 및 가격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지7]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가맹희망자 보관용)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성명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주소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 공 일 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제 공 장 소		
	제 공 방 법	☐ 직접전달	
	제 공 받 은 가 맹 희 망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수령사실 자필확인란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작성	(주)사틴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	-----------	------------

-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성명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주소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 공 일 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제 공 장 소		
	제 공 방 법	☐ 직접전달	
	제 공 받 은 가 맹 희 망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수령사실 자필확인란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작성	(주)사틴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	-----------	------------